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054 제출연월일: 2024. 12. 30.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의 인증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의 인증 관련 규정(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삭	제>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					
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					
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					
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					
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					
정의 인증(이하"인증"이라 한					
<u>다)을 할 수 있다.</u>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					
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					
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					
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					
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					
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 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
 다.
- ①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 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 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 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 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 〈삭 제〉 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 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 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인증받은 경우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표시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삭 제>